

SM그룹

윤리준법강령  
행동지침

---

# 목 차

제 1 장 총 칙

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금지

제 3 장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지급금지

제 4 장 공정한 업무수행

제 5 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

제 6 장 회사재산의 보호

제 7 장 중요정보 관리

제 8 장 이해상충행위 금지

제 9 장 실천지침의 준수 책임

## 제 1 장 총 칙

### 1. 목적

본 지침은 SM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「윤리준법강령」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적용대상

본 지침은 SM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, 필수 준수사항이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#### 가. 금품 등

- 금품: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기타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 기타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향응접대 또는 편의 제공 및 채무변제·취업제공·이권부여 등 그 밖의 일체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
- 향응접대: 식사, 주연, 골프, 공연, 국내·외 관광,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
- 편의: 금품 수수, 향응접대 외의 교통, 숙박,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의미

나. 친인척: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

다. 이해관계자: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·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(고객, 구성원, 주주, 협력회사, 지역사회, 국가 등)

라. 공금 횡령: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

#### 마. 기물 유출 등

- 기물 유출: 회사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
- 타용도 사용: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 시설, 기계, 자재,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

#### 바. 업무태만 등

- 업무태만: 직위,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- 근태불량: 고의적, 상습적으로 지각 또는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처리를 하는 행위
- 관리감독 소홀: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

#### 사. 불합리한 업무처리

-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
  -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,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
- 아. 월권행위: 직위,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상대방의 직권을 침해하는 행위
- 자. 성희롱: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

- 차. 개인정보: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 포함)
- 카. 중요정보: 회사의 고유정보와 고객정보 중 기록 유무나 보존형태를 불문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"중요정보"라 한다.
- 회사의 경영이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
  - 회사와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
  -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 또는 상품 등에 관한 정보
  - 회사의 공개되지 않은 사업전망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
  - 회사의 업무 관련 규정, 지침, 기타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한 정보
  - 업무수행 중에 습득한 회사의 고객정보
- 타. 외부 강의: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, 홍보, 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의 강의, 강연, 기고, 심사, 자문 등의 활동
- 파. 통상적 수준: 장소 및 목적, 참석자 범위 및 지위,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사한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었을 수준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

## 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

### 1. 원칙

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2. 부정 청탁

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규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.

- 채용,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
-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
- 거래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
-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

### 3. 금품 수수

- 가.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, 후원,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을 개인적으로 수수하거나 제공의사 표시,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 단,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-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홍보·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
  - 상사가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

- 퇴직·이동 등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구성원 간의 전별 선물
  -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, 선물 등
  -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·부조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, 경조사비 등
- 나.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협력회사에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.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협력회사가 화환이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.
- 다. 이해관계자가 선물 등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. 불가피하게 수령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윤리준법경영 담당조직인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 회사의 자산으로 사내에 비치하거나 사회공헌 등에 활용한다.

#### 4. 향응 접대

- 가.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를 수수하거나 요구·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 단,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.
-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협력회사와의 통상적 수준의 식사
  -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또는 음주 등 음식물
  -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·부조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
- 나. 협력회사와의 식사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 비용을 나누어 각자 부담하거나, 협력업체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다. 협력회사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, 술자리, 유흥·퇴폐업소 출입, 골프 등은 금지한다.

#### 5. 편의 제공

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하거나, 요구·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. 단,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·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.

#### 6. 채무의 면제, 상환, 보증 및 금전 등의 자산대차

- 가. 이해관계자에게 채무(카드대금, 외상값, 대출금, 이자 등)에 대한 면제, 상환, 보증(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)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.
- 나. 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계약체결,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·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행위로 간주한다.

#### 7. 배우자, 친인척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제한

구성원은 배우자, 친인척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경우에 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·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## 제 3 장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지급금지

### 1. 원칙

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,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.

### 2. 부정청탁의 금지

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일절 해서는 안 된다.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청탁금지법’)에서 정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·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(인·허가, 행정처분·형벌부과 감경·면제, 계약 당사자 선정·탈락 등)
- 본조 가항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·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

### 3. 금품등 지급금지

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. 단,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등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.

## 제 4 장 공정한 업무수행

### 1. 원칙

임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2. 공정한 경쟁

임직원은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삼가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3. 공정한 거래

-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고객 또는 협력회사에 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거나, 회사 또는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.
- 임직원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회사 등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조건 강요, 비용전가,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거래업체와는 이유 및 이자수수 여부 등을 불문하고 금전거래(대여, 차용)를 해서는 안 된다.

- 라.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, 이해관계자가 이를 약점으로 악용할 소지도 크므로 금해야 한다.
- 마. 거래 중에 있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거래선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물량, 단가 등 특혜제공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.
- 바. 회사가 투자한 비상장회사에 직·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임직원이 투자할 경우 자금, 기술지원, 인력 등 투자 조건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금해야 한다.
- 사. 거래업체로부터 통상의 단가보다 고가로 구매해 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반환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## 제 5 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

### 1. 상사의 부당한 지시 및 직무유기

- 가. 상사의 직무상 지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, 상사의 지시라 하여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.
- 나. 상사가 자신의 유관 거래업체를 부하에게 추천하며, 물품구매 등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또는 상사의 지시내용이 윤리준법강령 위반, 부정, 비리와 관련되어 있거나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윤리준법경영 담당조직인 정도경영실에 알리도록 한다.
- 라. 일반적인 업무처리상 위법 · 부당한 지시는 먼저 상사에게 지시내용의 부당함을 이야기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윤리준법경영 담당조직인 정도경영실에 알리도록 한다.
- 마. 타 부문의 청탁이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윤리준법경영 담당조직인 정도경영실에 알리도록 한다.

### 2. 부하에게 금품, 향응 등의 요구

- 가. 상사는 부하사원에게 격려조로 소정의 선물을 줄 수도 있으나 부하가 개인적으로 상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승진, 고과, 연봉 등에 혜택을 받기 위한 청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금한다.
- 나. 상사로부터 승격, 연봉, 고과상의 특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- 다. 상사가 부하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·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차용이나 대출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내부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윤리준법경영 담당조직인 정도경영실에 알려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.

### 3.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

- 가. 임직원 상호 간의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료간의 관계가

악화되어 근무 분위기를 해치거나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금전대차, 담보제공, 보증 등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- 나. 아래 예시와 같이 임직원 상호 간 선물은 금지하며, 기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물수수행위를 금지한다.
  - 명절선물 상납행위
  - 부서 간 선물제공 및 접대행위
  - 승진, 이동과 관련한 사내 임직원간 허례허식(화환, 축전발송 등)행위
- 다.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, 조의, 선물 등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#### 4. 경조금

임직원 상호 간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 승진, 전보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화환 등의 선물은 삼가도록 한다.

#### 5. 직장 내 성희롱 등 금지

- 가.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, 노동의욕 상실,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,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 -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, 워크샵, 단체행사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
  - 회사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 또는 비유하는 행위
  -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(여자이기 때문에, 남자이기 때문에)
  -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
  - 지위를 이용한 폭언이나 폭행
- 나. 성희롱 피해자는 즉시 가해자에게 거부의사 표시, 주의, 경고 등 개인차원의 우선적인 조치를 취하고, 내부고발·개선신고제도를 이용하거나 정도경영실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.

#### 6. 임직원 상호 간 사행행위 금지

도박성이 있는 행위는 상호 건전한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임직원 간 포커, 내기골프 등 오락수준을 넘어 상호 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도박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 제 6 장 회사재산의 보호

#### 1. 원칙

- 가.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유·무형의 자산을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대외활동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나.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유·무형 자산을 규정된 용도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,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

안 된다.

## 2. 인터넷 사용

임직원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회사의 인터넷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음란물 사이트 접속, 불건전한 채팅 · 도박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
- 증권 관련 매수 · 매도 거래행위 (단,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)
- 허가받지 않은 IP 주소의 사용 및 도용, IP 사용 권한의 무단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
-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행위
- 기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터넷 사용 행위

## 3. 올바른 SNS(Social Network Service) 활용

가.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.  
나.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, 인권침해, 개인정보 유출,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## 4. 보안

가.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  
나.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, 기술, 영업비밀,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.  
다. 임직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외기관 등에 중요한 자료나 문서 등을 송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## 5.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

가. 임직원은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불법구매 등을 통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  
나.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불법으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.  
다.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.

## 6. 문서관리

가. 임직원은 거래상대방과의 권리·의무에 관한 문서(전산기록을 포함한다)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문서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 
나. 임직원은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문서 또는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 또는 기록을 위조·변조하는 행위
-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
-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사전승인절차 없이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
-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적정 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를

### 소홀히 하는 행위

- 문서의 보존연한을 정하지 않거나 보존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폐기하는 행위

## 7. 예산 낭비 및 사적 사용 금지

- 가. 회의비, 접대비, 판매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, 예산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나. 사업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법인카드도 업무 목적 외 사적 경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## 제 7 장 중요정보 관리

### 1. 중요정보의 관리

중요정보는 해당 정보 관련 주무부서에 의해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는 관련 법규와 이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.

- 중요정보는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직원(파견 인력 포함)만이 공유한다.
- 모든 임직원은 중요정보에 대한 공유의 권한과 책임이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 중요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, 특히 대중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중요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.
-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요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, 업무와 관련이 없는 중요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.
- 모든 임직원은 중요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전자적 저장장치 등을 허용된 임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공개적인 장소에 배치해서는 안 되며, 폐기 시에도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모든 임직원은 중요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전자적 송신이나 저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수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중요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직원의 업무장소와 구별된 회의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### 2. 정보유출행위 금지

모든 임직원은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 또는 감독기관에 제공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### 3. 정보의 제공

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컨설팅 회사, 다른 금융기관 등 외부로 회사의 중요정보를

제공할 경우에는 소속 조직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## 제 8 장 이해상충행위 금지

### 1. 원칙

- 가.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.
- 나.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계열사의 고객이나 다른 임직원과 공모하여 투기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,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, 회사의 명예나 평판 등을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.
- 다. 임직원은 고객 또는 회사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준법경영 담당조직인 정도경영실과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2. 이해상충행위 금지

- 가. 모든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나. 모든 임직원은 임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업기회를 포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우선적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.
- 다. 모든 임직원은 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라.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,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, 은폐, 독점하여서는 안 된다.

### 3. 회사업무 외 겸업 금지

- 가. 겸업 및 부업이란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, 임직원은 회사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역이 수반되는 겸업 및 부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나.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겸업(이중취업 포함)을 해서는 안 되며, 일과 후 부업활동 (아르바이트 포함)도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윤리준법강령 위반으로 간주한다.
- 다. 업무에 도움이 되거나 회사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라. 다단계 판매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하는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임직원 또는 협력회사에게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조직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므로 절대 금한다.

#### 4. 협력회사에 대한 투자

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,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#### 5. 비공개정보의 사적 이용

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,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## 6. 외부 강의

- 가. 회사의 재직기간 중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부서장 및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나. 임직원이 외부 강의 시 강의료 또는 교통비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 
단, 수령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7. 회사 인력 유출

모든 임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인력소개업체 (Search Firm)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
## 제 9 장 실천지침의 준수 책임

1. 모든 임직원은 윤리준법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
2. 조직의 리더는 소속 임직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준법강령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.
3. 본 윤리준법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최대 해고에 이르는 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.